천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천서 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유아교육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본 유치원은 천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라 한다. (이하 "본원 '이라 함)

제3조(위치) 본 원은 익산시 춘포면 천서길 221번지에 둔다.

제2장 교육연한, 학기 및 휴업일

제4조(교육연한) 본원의 교육연한은 1~3년으로 한다.

제5조(학기) 본원의 학기는 2학기로 나누되, 제 1학기는 3월 1일부터 유치원의 수업일수,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하는 날까지, 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
제6조(휴업일) 본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.

- 1. 관공서 공휴일
- 2. 개교기념일
- 3. 하계휴가일
- 4. 동계휴가일
- 5. 학년말 휴가일
- 6. 학교장(유치원장) 재량휴업일
- 7. 기타휴업일: 천재지변, 유행성 전염병, 기타 긴박한 상황이 발생 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.

제3장 학급편제 및 유아정원

제7조(학급편제) 본원의 학급 수는 전라북도교육감이 정한 바에 따른다.

제8조(유아정원) 본원의 유아 정원은 전라북도교육청 유치원 학급편성기준에 따른다.

제4장 교육과정 및 운영방법

- 제 9조(교육과정 및 교육내용) 1. 유아교육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 교육과정을 운영한다.
 - 2. 본원은 국가 수준의 유치원 교육과정, 전라북도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·운영 지침을 근거로 지역 실정과 본원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선정하여 교육과정을 편성· 운영한다.
- 제 10조(수업일수) 1. 본 원의 수업일수는 년 180일 이상으로 한다. 단, 유치원장은 천재지변이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10분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.
 - 2. 관할청이 법 31조 제1항에 따라 휴업을 명한 경우, 원장은 그 휴업명령에 따라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업 일수를 줄일 수 있다.
 - 3. 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
 - ①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연간 최대 30일까지 인정한다.
 - ② 교외체험학습 운영 절차는 보호자가 신청서를 본원에 제출한 후 실시하며 끝난 후에는 보고서를 제출한다.
- 제 11조(교육시간) 본원은 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으로 운영한다.
 - 1. 교육과정: 1일 4시간~ 5시간 편성 · 운영한다.
 - 2. 방과후과정: 기본교육과정 유아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오후 재편성하여 기본교육 과정 포함 1일 7시간~8시간 이상 편성·운영한다.
 - 제 12조(생활기록부 작성·보관) 법 제14조에 의거 생활기록부를 작성한다.

제5장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생활지도

제13조(생활지도의 범위) 원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.

- 1. 교원의 수업권과 타인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
- 2. 유치원의 학급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ㆍ사용
- 3.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행위
- 4.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
- 5.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
- 6.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
- 7.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
- 8. 유아 간의 갈등조정 및 관계개선
- 9.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유아에 대한 인식 및 태도
- 10. 그 밖에 교무회의에서 정하는 사항

- 제14조(훈육) 원장과 교원은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유아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.
 - 1. 유아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
 - 2. 관련 법령에 따라 유아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
 - 3. 유아 또는 교직원의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거나 교육활동 침해소지가 있는 물품
- 제15조(기타) 그 밖에 생활지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 제14조 제2항 및 교육부의 「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」와 관합청의 지침에 준한다.

제6장 입학·재입학·편입학·전입학·휴학/퇴학·졸업·수료

- 제16조(입학자격) 본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로 한다. (초등학교 입학 유예자도 포함한다.)
- 제17조(입학결정) 본원에 입학하려는 유아는 입학자격이 충족될 시에는 입학을 결정한다.
- 제18조(재입학) 1. 만 3,4세에 입학하여 재학 중인 유아의 경우는 유치원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가한다.
 - 2. 만 6세아 중 초등학교 취학을 유예한 유아의 경우는 유치원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가한다.
- 제19조(편입학) 본원에 다니다가 휴학 한 유아가 편입학을 희망할 경우 정원 내에서 허가한다. 제20조(전입학) 공립유치원에서 본원으로 전입학을 희망할 경우 정원 내에서 허가한다. 제21조(휴학/퇴학) 1. 휴학/퇴학: 질병 등 기타 가정사유로 휴학이나 퇴학을 희망할 경우 유치원장은 휴원서 및 퇴원서를 받아 처리한다.
 - 2. 유아가 각 호에 해당한 때는 퇴학을 명할 수 있다.
 - 가.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
 - 나. 질병 및 기타 사유로 타 유아의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자
- 제22조(졸업) 유치원장은 1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만 5세 유아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. (단, 교육일수 3분의 2미만 이수한 유아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한다.)
- 제23조(수료) 유치원장은 당해 유치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만 3~4세 유아에게 수료증을 수여한다.

제7장 수업료. 입학금

제24조(수업료,입학금) 본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유아교육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유치원의 실정에 따라 원장이 정한다.

제8장 규칙 개정

제25조(규칙개정) 본 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본원의 교직원이 협의하여 결정하고, 개정내용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.

부 칙

- 1. 본 규칙을 시행함에 필요한 세칙은 유치원장이 이를 정한다.
- 2. 본 규칙은 2020년 11월 3일부터 적용한다.
- 3. 본 규칙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적용한다.